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합116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B

변론 종결2020. 7. 3.

판결 선고2020. 8.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구로구 C 대 407m²의 7/6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407m² 1)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65. 10. 13. 접수 제260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19,59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 1) 원고는 부 F(1978. 3. 24. 사망), 모 G(1997. 2. 18. 사망)의 장녀이다. 원고의 형제자매로 H(1943년생, 여), I(1947년생, 여), 피고(1949년생, 남), J(1950년생, 남, 사망), K(1956년생, 여)이 있다.
- 2) F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C 대 77평(이하 '합병전 1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65. 10. 13.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26003호로 196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L 답 46평(이하 '합병전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8.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07호로 1977.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83. 8. 22. 합병전 2토지가 합병전 1토지에 합병되면서 서울 구로구 C 대 40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 3) 피고는 M과 법률상 부부였으나, M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M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6. 3. 25. 접수 제18956호로 2003. 2. 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피고, D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7163(본소)호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2.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7468(본소), 7475(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02. 8. 30. 위 법원은 제1심 증인 I, H의 각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2다56062(본소), 2002다56079(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2. 11.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재나278(본소), 2004재나285(반소)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2. 17. 『F이 합병 전 1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자 피고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합병 전 2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선행판결 원고는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F은 F과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F의 상속인으로서 매도인인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193호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6.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37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재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D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65 지분에 관하여 1965.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193호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372호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은 1965. 9. 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1965.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F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매도인 D 소유이다.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65 지분에 관하여 1965.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매도인 D의 매수인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F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19,592,253원(=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한 시가 1,110,499,500원 × 원고의 상속분 7/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65 지분에 관하여 1965.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7. 7. 4. 선고 2017나2076372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6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는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65 지분 범위 내에서만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위 D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7/65 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분

-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
- 2)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전하여 매도인 D의 매수인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F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7/6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유형

판사김병진

판사김보경

-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서울 구로구 E 대 407m²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 2)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